

창원지방법원 2022. 1. 13 선고 2019나670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

변 론 종 결 2021. 12. 2.

판 결 선 고 2022. 1. 13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. 11. 21. 선고 2018가단10471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. 12. 15. 및 2018. 1. 3. 각 체결된 매매계약을 3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“B에게” 다음에 “당좌부도를 원인으로”를 추가한다.
- 제1심 판결 제3쪽 4행의 “473㎡를 매수하고”를 “473㎡(이하 ‘이 사건 합병전 토지’라 한다)를 매수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”로 바꾼다.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7. 12. 15.경에는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,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8. 4. 19. B에게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이에 원고가 2018. 6. 28. C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.

3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가. B의 채무초과 상태

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는 위 매매 무렵 B의 물상담보 제공분(R의 채무에 대한 담보)을 제외한 순적극재산 합계액이 4,052,934,765원 ~ 4,063,465,165원, 소극재산 합계액이 4,264,914,371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.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적극재산 평가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, 다만, 원고 계산의 소극재산 내역 중 일부 존재하지 않는 채무액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채무액 130,609,838원을 제외하면 소극재산 합계액이 4,134,304,533원이라고 주장하는바, 결국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, 수익자의 악의

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와 이를 매수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7252 판결,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).

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합병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채무자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다만,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합병전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B이 아닌 G이 2018. 1. 3. 피고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으로, 단지 매도 후 합병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게 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.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2018. 1. 3.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서까지 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.

다.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대한 판단

1) 피고는 이 사건 합병전 토지 인근 사찰인 Q사의 대표자로서, 이 사건 합병전 토지를 Q사의 진입로

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하였고, B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,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

2)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).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,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). 그리고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또한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,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2다7526 판결 참조).

3)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, 위 기초사실과 갑 9호증의 11, 을 5, 6, 8, 9,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위치한 Q사라는 사찰을 창건한 Q사의 대표자(주지)인데, 이 사건 합병전 토지는 Q사의 정문 쪽에 위치한 도로의 부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가 B의 허락을 받아 신도 등의 출입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던 점, ② 피고와 B은 이 사건 합병전 토지의 사용허락 및 매매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일 뿐, 계속적 거래관계나 친인척 관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,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또 다른 토지주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전 토지와 연결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답 100㎡ 및 I 답 335㎡도 함께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합병까지 한 점, ④ B과 피고는 이 사건 합병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5,000만 원으로 정하고, 피고가 B에게 2016. 8. 29.

제공한 3,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중 3,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고, 잔금 2,000만 원은 2018. 1. 11.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, 실제로 피고가 B에게 2018. 1. 3. 2,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, 위 매매대금 5,000만 원은 이 사건 합병전 토지의 당시 시세에 부합하는 액수였던 점, ⑤ 피고가 2016. 8. 29. B에게 3,000만 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, 피고는 이를 대여금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, 설령 위 돈이 원고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 합병전 토지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, 그 해당 사용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, B와 피고 사이에 위 지급된 돈을 매매대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, ⑥ 원고의 최종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B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적극재산 합계액의 약 105% 상당으로 적극재산 합계액을 비교적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, 또한 B의 소극재산 내역과 적극재산 내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, 제3자인 피고가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, 달리 피고가 B의 재산 또는 신용상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황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.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민정, 판사 서경원, 판사 진민희